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음주약물운전 치사상죄 추가 등〉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27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청래의원 등 10명
2. 제 안 일 : 2024. 9. 9.
3. 회 부 일 : 2024. 9.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슬픔도 회복하지 못하고,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 Ⅲ. 검토의견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제도<sup>1)</sup>

##### 가.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함)에 따른 배상명령제도는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81년 3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임<sup>2)</sup>.

즉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1)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62조) 및 제1심의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절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도 배상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까지 병합심판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때 생길 재판의 모순저축 방지에 제도적 취지가 있음<sup>3)</sup>. 특히, 동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제기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sup>4)</sup>,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sup>5)</sup>,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4. 3. 15., p. 314.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나. 배상명령 대상

### (1)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제25조제1항제1호), 그리고 위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제25조제1항제3호)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상 특수한 범죄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상의 특수한 범죄유형(제25조제1항제2호)으로 한정되어 있음.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위에 규정된 죄 및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제25조제2항).

#### < 배상명령⑥ 대상범죄 >

| 근거법률 | 범죄유형                                                                                                                                                     |
|------|----------------------------------------------------------------------------------------------------------------------------------------------------------|
| 형법   | - 상해죄(제257조제1항)<br>- 중상해죄(제258조제1항 및 제2항)<br>- 특수상해(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br>- 상해치사죄(제259조제1항)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치사상죄(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li> <li>-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li> <li>-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li> <li>-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li> <li>-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li> <li>- 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li> <li>- 손괴의 죄(제42장)</li> <li>- 위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li> </ul>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li> <li>-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li> <li>-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li> <li>-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li> <li>-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미수죄(제14조 및 제15조)</li> </ul>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li> <li>-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li> </ul>                                                                                                                                                                                         |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한정한 취지는 형사재판의 본질, 신속한 형사재판의 원칙<sup>7)</sup>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므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제도가 적용될 경우 형사재판이 지연되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고,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형사재판이 민사재판화 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배상명령 대상 범죄를 일정한 범죄로 한정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확대되고

6)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임(제25조제1항).

7)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있는데, 「소속법」 제정 당시에는 성범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sup>8)</sup>, 2009년 11월 2일 동법의 개정으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하게 되었고(‘10. 5. 3. 시행<sup>9)</sup>), 2012년 1월 17일에는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성범죄가 추가(‘12. 1. 17. 시행)된 바 있음<sup>10)</sup>.

## (2) 해외 입법례 및 시사점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관한 해외 입법례를 보면, 각국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따라 대상 범죄가 유동적임<sup>11)</sup>.

미국에서는 배상명령의 성격이 형사절차에서의 형벌 또는 제재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으며<sup>12)</sup>, 일본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해진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대상범죄를 고의의 범죄행위에

---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 1981. 3. 1.] [법률 제3361호, 1981. 1. 29., 제정]

제25조배상명령)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9) 부 칙 <법률 제9818호, 2009. 1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법률 제11163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황윤상,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12. 4., p. 106.

12) 김정우·고은주, 피해자를 위한 바람직한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통권 제97호, 2014·봄), pp. 155~158. / 황윤상, 앞의 글, pp. 103~108.

연방법 Title 18에 언급되는 모든 범죄와 Title 49의 마약범죄를 포함한 일정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18 U.S. Code § 3663.Order of restitution)

의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죄, 강제외설 및 강간 등의 성범죄, 체포 및 감금의 죄와 더불어 약취 및 인신매매의 죄(이들 죄의 범죄행위를 포함한 죄 및 이들 죄의 미수를 포함)와 관계된 형사피고사건(단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제외)으로 한정하여<sup>13)</sup> 우리나라의 배상명령 보다 대상 범죄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현행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추구하는 각각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손해 확인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범죄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4)</sup>.

따라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고려하되 타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절차의 지연 등에 따른 피고인의 인권문제, 형사재판부 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13) 김정우·고은주, 앞의 글, pp. 159~161. / 황윤상, 앞의 글, pp. 102~108.

14)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신속한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상적 배경에서 탄생한 제도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충실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할 문제로 판단됨.

## 다. 배상범위

현행법상 배상명령을 통한 배상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한정되어 있음.<sup>15)</sup> 즉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됨<sup>16)</sup>.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임.

배상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본질을 고려한 것이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임<sup>17)</sup>.

---

15)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6)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 안내-배상명령 참고([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17) 형사재판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복잡한 손해 산정 문제는 민사재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sup>18)</sup>에 따른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 제25조(배상명령) ① -----<br>-----<br>-----<br>-----<br>-----<br>-----<br>----- |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                                                                                                                                                                                                                                                                                                                                                                                                                     |
|-----------------------------------------------------------------------------------------------|---------------------------------------------------------------------------------------------------------------------------------------------------------------------------------------------------------------------------------------------------------------------------------------------------------------------------------------------------------------------------------------------------------------------|
| <p>수 있다. &lt;단서 신설&gt;</p> <p>1. 2. (생략)</p> <p>&lt;신설&gt;</p> <p>3. (생략)</p> <p>②·③ (생략)</p> | <p>-----. 다만, 제3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죄</p> <p>4. (현행 3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배상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명한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
|-----------------------------------------------------------------------------------------------|---------------------------------------------------------------------------------------------------------------------------------------------------------------------------------------------------------------------------------------------------------------------------------------------------------------------------------------------------------------------------------------------------------------------|

###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 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

개정안에서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sup>19)</sup>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sup>20)</sup>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임.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범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는 범죄 피해자 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심각한 범죄이자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큰 범죄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범죄로 볼 수 있음.

다만,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형법」 제26장(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sup>21)</sup>에 규정된 죄 및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sup>22)</sup> 「형법」 제268조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도 현행법상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1)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제2항(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 나. 배상범위 확대

현행법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의 범위를 비교적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 가능한 손해 즉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배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이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까지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교통사고 발생시 유자녀 나이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양육 환경에 놓여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sup>23)</sup>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육비용 배상을 명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용 배상은 그 산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예측을 필요로 하므로 형사재판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며, 그 산정을 위해 상당한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데, 이

---

23) 허민숙, 앞의 글

로 인하여 형사재판의 심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음.

양육비는 단순히 현재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양육비 산정에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지역, 교육비, 치료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sup>24)</sup>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양육비와 같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민사적 배상 문제를 다루는 경우, 형사와 민사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본질<sup>25)</sup>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한정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구분되어 있어, 유죄 판단을 마친 후 양형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부분을 심리할 수 있으나<sup>26)</sup>,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동시에 진행되고 배상명령도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sup>27)</sup> 유죄 선고 전 유죄를 전제로 양

---

24) 법원행정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가사재판(이혼) 실무상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여기에 ① 부모의 재산상황, ② 거주지역, ③ 자녀 수, ④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⑤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⑥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예: 개인회생 절차 중) 등 여러 가지 양육비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의 재량에 따라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함. 그 후 부모의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을 결정함.

25) 형사재판은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복잡한 손해 산정 문제는 민사재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26)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육비 산정을 위한 증거조사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

둘째, 개정안과 같이 특정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양육비용 배상을 명하도록 규정할 경우 음주·약물 운전 교통사고 이외의 살인, 상해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일한 법적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4.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현행법상으로도 배상명령을 통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자녀 지원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형사재판 심리의 복잡화 및 장기화 우려가 있으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소송 이념이나 입증방식 등이 상이한바, 형사재판 고유의 심리 영역 외에 별도의 심리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061 |